

의안번호	2213856
의 퇴 인	안호영의원
회 답 일	2026.1.6.
추계번호	25B5966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7조의2(부담금 등의 면제) 신설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「농지법」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「농지법」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27조의2(부담금 등의 면제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조1)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

- 1) 제7조(토지등의 매수 등) ①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,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(이하 “토지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(買收)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.
-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·형상·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.
1.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
 2. 하천·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결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
-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미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(受益)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, 매수 우선순위 선정, 매수 가격의 산정 방법 및 시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활용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「농지법」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²⁾을 면제하도록 하고,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³⁾하도록 하는 내용임

- 개정안이 시행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,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출이 감소함과 동시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수입이 감소하는 재정변동이 예상됨
- 현행 「농지법」 제3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⁴⁾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·공공용 시설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50%를 감면할 수 있음
 - － 참고로,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례는 없음
 - － 한편,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수계관리기금사업 점검 결과(2025.4.) 수변생태벨트 조성과정에서 미납한 농지보전부담금은 총 922억원 규모로, 수계관리기금별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497억원,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87억원, 영산강·섬진강 수계관리기금 142억원, 금강수계관리기금 96억원임

2) 「농지법」 제38조(농지보전부담금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·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(이하 “농지보전부담금”이라 한다)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·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.
 1.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
 2.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(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)를 전용하려는 자
 2의2.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
 3.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
 4. 삭제
 5.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

3) 안 부칙 제2조(부담금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4) 「농지법」 제38조(농지보전부담금)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
 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
 3.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
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52조(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)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.

- 개정안 시행에 따른 재정변동 규모는 농지전용면적 및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⁵⁾, 향후 발생할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대상 농지전용면적의 규모 및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

5) 「농지법」 제38조(농지보전부담금) ⑦농지보전부담금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,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, 부과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: 허가를 신청한 날
2.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
3.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
4.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: 신고를 접수한 날

[참고자료]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
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(법 제38조제6항제1호 관련)

(단위: %)

감면대상	감면비율	
	농업진흥지역 안	농업진흥지역 밖
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·사방 등 국토보존 시설	100	100
나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·폐수종말처리시설·분뇨처리시설·폐기물처리시설·축산폐수처리시설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	50	50
다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·공공용 시설(주된 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되는 공용·공공용 시설을 포함한다. 다만, 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)	50	50

자료: 농지법 시행령 [별표2] 발췌